



보도시점 2026. 4. 1.(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6. 3. 31.(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현장 활용성 높여 녹색투자 기반 강화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개정본을 발간하고, 활동별 표준산업 분류(KSIC) 연계표를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녹색투자 판단을 적극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가이드라인)’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하여 발간하고,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설서를 발간해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채권('22), 녹색자산유동화증권('23), 녹색여신('24) 등 다양한 녹색금융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2025년 12월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반영하여 신설·추가·개정된 경제활동을 포함했다. 또한, 개정된 기준과 판단 방법을 중심으로 △활동의 정의 및 범위, △인정기준(기술적 판단기준 등) 적용 방법,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적용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의 총 100개 경제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기준)를 연계한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계 작업으로 각 경제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수준까지 연결되어 금융 및 산업 현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경제활동과 녹색분류체계 간 연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여신 및 투자 심사 과정에서 산업분류 기반의 체계적 판단이 가능하며, 녹색금융 정보공개 및 보고에서도 이전보다 일관된 기준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를 포함한 이번 해설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며, “자금의 흐름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2.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개요.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이민선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책임자	실 장	조기숙	(02-2284-1960)
		담당자	책임연구원	김남균	(02-2284-1971)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2개 부문, 100개 경제활동
 -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93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개념 및 용어

- (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경제활동” 단위로 정의·제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생산단위(사업체·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 *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연계 의의 및 유의점

- (의의) 경제활동과 산업분류 간 연결고리를 제공함으로써, 녹색경제 활동의 산업적 위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 등의 활용성을 제고
 -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연계되는 KSIC 코드를 기본으로 제시하되, 해당 활동을 활용·적용하는 활용주체의 경우도 폭넓게 제시
- (유의점) 특정 기업의 산업분류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기 보다,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개별 경제활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녹색분류 체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기업단위 KSIC과 개별 활동단위의 KSIC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예) 단일기업 내에서 사업장별 다양한 경제활동 수행하는 경우, 여러 KSIC 연계 가능



<연계표 일부 예시>

○ 1.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라. 도시·건물 분야 중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명	구분	세세분류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수행주체	4111 1	단독 주택 건설업	411 1	주거용 건설업	41 1	건물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F	건설업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수행주체	4111 2	아파트 건설업	411 1	주거용 건설업	41 1	건물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F	건설업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수행주체	4111 9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11 1	주거용 건설업	41 1	건물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F	건설업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수행주체	4112 1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411 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 1	건물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F	건설업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수행주체	4112 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 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 1	건물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F	건설업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수행주체	4112 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 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 1	건물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F	건설업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활용주체	6811 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 1	부동산 임대업	68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	부동산업	L	부동산업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활용주체	6811 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 1	부동산 임대업	68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	부동산업	L	부동산업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활용주체	6812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	부동산업	L	부동산업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활용주체	6812 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	부동산업	L	부동산업